



제432회국회(임시회)
제 1 차 교 육 위 원 회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〉

■ 이훈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005호)

2026. 2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훈기 의원 등 12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1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,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,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,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,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① 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로 <u>셋 이상의</u>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~~둘 이상의~~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② 제1항에 따라 <u>둘 이상의</u>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<u>둘째</u> 자녀에 대해서는 <u>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, 셋째 이상의</u>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·③ (생략)	④ 제3항에----- -----. 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제49조의4제3항에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4¹⁾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이 소득수준,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짐.

□ 특히, 동 법 제49조의4는 자녀가 ‘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’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지원액

1)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① 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은 일반가구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상회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음.

-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, ‘셋째 이상’은 8구간 이하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, ‘첫째와 둘째’는 기초·차상위 구간에서는 전액을, 1구간 이상은 구간별 지원액을 일반가구 대비 높게 산정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음.

<2025년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>

(단위: 만원)

구분		기초·차상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	9구간
일반가구 국가장학금 1 유형		전액	600			440			360		100
다자녀 가구	첫째·둘 째		610			505			465		135
	셋째 이 상		전액								

자료: 교육부

□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살펴보면, 2023년에 0.72명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 소폭 상승하여 0.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.37명을 절반 수준에 해당함.

<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통계>

(단위: 명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계출산율	0.84	0.81	0.78	0.72	0.75

자료: 통계청

주: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(15세~49세)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.

개정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도 가구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로 보아 학자금 우선 지원이 필요하며, 다양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①다자녀 기준을 현행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완화하고, ②다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.

□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보면 우선 지원인원 면에서, 현재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선적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2025년 기준 약 25만명(총 253,215명)으로 집계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지원을 받게되는 인원은 총 50만명(506,157명)으로 추산됨. 따라서, 개정안에 의할 때, 현재 우선적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비하여 그 인원이 2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.

①9구간, 10구간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추산 인원 총 37,283명, ②자녀가 두 명인 가구가 다자녀 가구가 됨에 따른 두 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 총 240,359명, 둘째 자녀 총 265,798명임.

또한, 지원대상 면에서 현재는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10구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고 있으며, 9구간에 대한 지원 단가는 타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, 개정안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 및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

필요한 대상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하려는 본래 규정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이 있게 됨.

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, 동 개정안에 따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10구간의 둘째와 셋째는 단가에 차이는 있으나,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됨(0→212만원 또는 0→전액). 아울러 9구간의 경우에도 단가가 인상되어 셋째는 200만원→전액으로, 2)둘째(자녀가 둘인 경우)는 100만원→212만원 지원금액이 인상됨.

<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 변화>

(단위: 만원)

구분			현행 제도상 국가장학금 지원단가(I 유형)	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 (다자녀 가구 단가)	인당 추가지원액
자녀가 둘인 가구	첫째	1~3구간	600	610	10
		4~6구간	440	505	65
		7~8구간	360	465	105
		9구간	100	135	35
		10구간	0	0	-
	둘째	1~3구간	600	610	10
		4~6구간	440	505	65
		7~8구간	360	465	105
		9구간	100	212	115
		10구간	0	212	212
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	둘째	9구간	135	212	80
		10구간	0	212	212
	셋째	9구간	200	전액	전액-200
		10구간	0	전액	전액

자료: 교육부, 재구성

주: 둘째에게 지원되는 단가인 212만원은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0

2) 국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약 424만원의 100분의 50

<2025년 4년제 평균 연간 등록금 현황>

연도	4년제	
	국공립	사립
2025년	424만원	800만원

□ 한편,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,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’에 따르면,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.

현행 법률에서 다자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³⁾를 살펴보면,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령에서는 다자녀가구를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보아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,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가 둘 이상이기만 하면 다자녀 가구로 보는 경우 등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음.

<다자녀가구 규정에 대한 입법례>

구분	셋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	둘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
입법례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」	「관광진흥법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다자녀정책	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	철도운임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

□ 다음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, 앞서 밝힌 학자금 지원 효과 확대에 인하여 ①다자녀가구 기준 조정에 따라 새롭게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는 2인 자녀 가구에

3) 참고로, 2017년 개정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2호에서 다자녀가구를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음. 반면,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제3항은 2025년 개정되어 다자녀가구를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.

대한 재정소요와 ②둘째,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단가를 각각 국공립 대학 등록금의 100분의 50, 전액으로 상향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9구간, 10구간의 둘째, 셋째 자녀에 대한 재정소요가 예측됨.

구체적으로, 다자녀가구 기준 조정^①에 따른 재정소요 예측치는 연간 약 3,345억으로 추계되고 있으며,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한 9구간, 10구간의 둘째, 셋째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^② 소요 예측치는 연간 약 8,102억원으로 추계됨.

이러한 비용추계를 고려할 때, 재정적 소요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
- ☐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, 교육부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, 추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 6788-5193